◉포항해양경찰서공고 제2023-18호

「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」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8월 30일

포항해양경찰서장

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포항해양경찰서고시 제2020-1호「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」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항포구 지형변화와 제목변경·각종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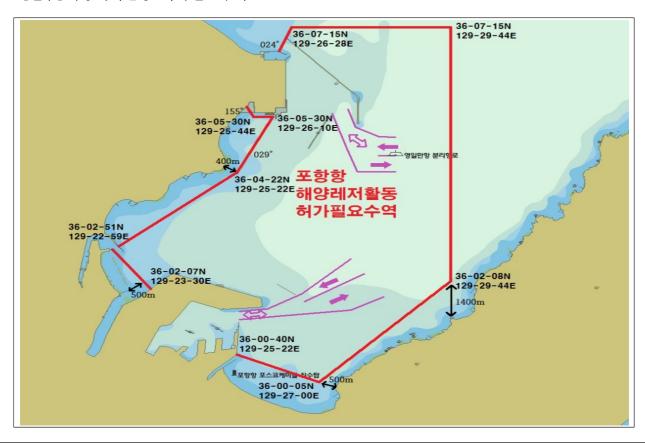
- 가. 기존 허가대상수역의 경우 일반인들이 해양례저활동이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**허가필요수역**으로 명칭변경
- 나. **재검토 기한 변경** :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에서 **2024년 1월 1일**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로 변경
- 다. **부칙 변경**: 종전의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(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-1호)는 폐지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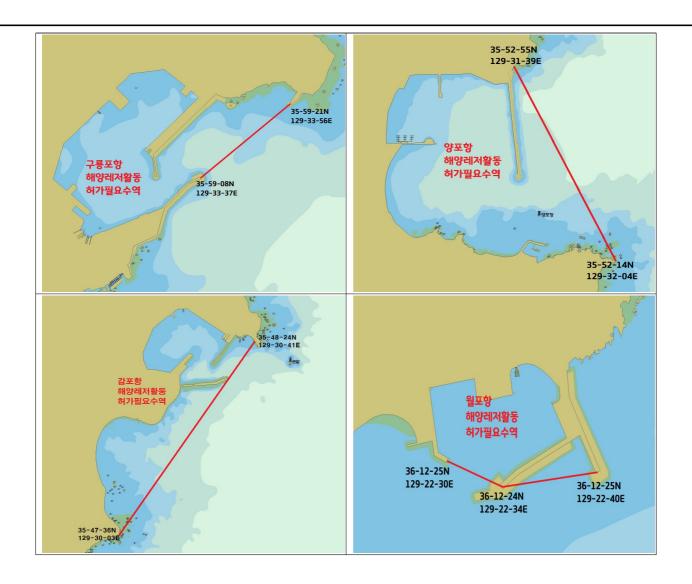
라. 해양례저활동 허가필요수역

연번	항만명	소 재 지	고 시 수 역(WGS-84)	
1	포항항	경북 포항시	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동단(36-07-15N, 129-24-58E)에서 36-07-15N, 129-29-44E 해점을 거쳐 포항시 남구 동해면 술미 (36-01-23N, 129-29-44E)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중 다음 "가"부터 "라"까지의 수역을 제외한 해면 가. 영일만항 어항방파제 굴곡부지점(36-06-48N, 129-26-13E)으로부터 024°로 그은 선과 항계선이 만나는 해점(36-07-15N, 129-26-28E)을 연결한 선에서 연안에 인접한 해면 나. 포항구항 북방파제 끝단 붉은 등대에서 직선거리 240m 인쪽지점(36-02-51N, 129-22-59E)으로부터 여남갑 남동방향 400m 해점 (36-04-22N, 129-25-22E)으로 그은 선에서 029°로 그은 선과,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항 방파제(36-05-43N, 129-25-36E)에서 155° 방향 36-05-30N, 129-25-44E 해점으로 그은 선과 이 해점에서 090° 방향 연장선이 만나는 해점(36-05-30N, 129-26-10E)을 연결한 선에서 연안에 인접한 해면	

			다. 포항구항 남방파제 끝단에서 형산강하구 방파제 끝단의 연장방향 500m 해점(36-02-07N, 129-23-30E)을 지나 포스코 포항제철소 호안(기슭·제방 보호시설)과 연결한 선 안의 해면
			라. 포항시 남구 청림동 냉천교 끝단 연장선 지점인 포항신항 남방파제 굴곡부지점(36-00-40N, 129-25-22E)에서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큰방파제 끝단 북서방향 500m 해점(36-00-05N, 129-27-00E)을 연결한 선과 포항시 남구 동해면 술미에서 정북방향 1,400m 해점(36-02-08N, 129-29-44E) 항계를 연결한 선에서 연안에 인접한 해면
2	नुस्रमुके	포항시 남구	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6리 방파제 끝단(35-59-21N, 129-33-56E)과 구룡포항 남방파제 끝단(35-59-08N,
		निहम्भी	129-33-37E)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
3	양포항	포항시 남구	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동측 끝단(35-52-55N, 129-31-39E)으로부터 남측 양포등대 끝단(35-52-14N,
		장기면 양포리	129-32-04E)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
4	감포항	경주시	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송대말 끝단(35-48-24N,
		감포읍 감포리	129-30-41E)과 남서 방향 지점(35-47-36N,
			129-30-03E)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
5	월포항	포항시 북구	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동방파제 끝단(36-12-25N,
			129-22-40E), 남방파제 끝단(36-12-24N, 129-22-34E),
		청하면 월포리	서방파제 끝단(36-12-25N, 129-22-30E)을 순차적으로
			연결한 선 안의 해면

마. [별첨]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도



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·단체 또는 법인은 **2023. 9. 26.(화)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사 유
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
 - 1) 우편 또는 Fax 등
 - 우편: (우)37642, 경북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151번길 21, 포항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
 - 전화 : 054) 750-2449 / Fax : 054) 750-2948
 - 전자우편(메일): threhr123@korea.kr
 - 2) 자세한 사항은 포항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(경사 이건병, ☎054-750-244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